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5. 14 선고 2023나32358 판결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5. 14 선고 2023나32358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9. 12 선고 2021가단3843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심

담당변호사 정은혜

피고, 항소인B

변론 종결 2024. 4. 23.

판결 선고 2024. 5. 14.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9. 12. 선고 2021가단38436 판결

주문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1,420만 원에서 2023. 4. 1.부터 별지 건물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5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을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23. 9. 12. 무렵까지"로 고치고, 제2쪽 아래에서 2, 3행을 "라. 피고는 2023. 9. 12.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가집행 절차를 진행하자 2024. 2. 2. 임의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쪽의 9행부터 16행까지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2,000만 원에서 미지급 부당이득금, 원상회복비용, 강제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1,53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이행을 구하는 부분의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건물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로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2024. 2. 2.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되, 소송 총비용에 관하여는 이 사건 항소심 진행 중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패소한 점 등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 후단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한다.

재판장판사박상준

판사최경은

판사임세영

별지